##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2. 5. 8.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4월 2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5. 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오승환 )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용어정의 : 비용추계서, 세출, 세입 등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 규정(안 제2조제4항~제6항)
-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정함
    - · 작성 대상 :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
    - · 제외 대상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사업의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예산을 수반시 비용추계서 작성

-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및 서식을 정함(안 제13조)
  -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별지 제2호)
  - 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 필요시 단축·연장가능
-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규정(안 제14조)
  - 추계서의 제출시기는 구의회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첨부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시 미첨부 사유서 제출 (별지 제3호)
- 신설규정 삽입으로 조문배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헌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11.10.15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추계한 자료를 비용추계서로 정의하고 세출과 세입 등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 안 제12조에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으로 하고, 제외 대상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주민청구 조례안이 그 시행에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함.

###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 의안 비교 ◀

정 부	서 울 시	타시도
<ul> <li>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 시적 경비로서 30억원 미만 인 경우</li> <li>법령안의 성격상 재정소요추 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li> <li>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군사 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정소 요추계의 내용을 첨부하기 곤 란한 경우</li> </ul>	●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10 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평균         일반예산           1억원         미만, 한시           적         경비           3억원         미           만         의안의           내용이         선           언적         권고적으로           규정되는         등           적으로         추계가           려운         경우

- 안 제13조에 비용추계서 작성방법과 서식을 정하고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비용발생 내역, 비용 추계의 기준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필요시 단축·연장이 가능하며,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용하도록 함.
- 안 제14조에 비용추계서 제출시기를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되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첨부하도록 하고,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일괄 정비함.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안 제출 시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의안 발의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의안심사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집.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 113 호 번 호

제출연월일: 201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 비용추계서, 세출, 세입 등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한 용어 규정(안 제2조제4항~제6항)

- 나. 비용추계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정함
    - 작성 대상 :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의안
    - 제외 대상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사업의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정부, 서울시, 타시도 기준

- 정 부 : 연평균 10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총 30억원 미만 - 서울시 : 연평균 5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총 10억원 미만 - 타시도 : 연평균 1억원 미만, 한시적 경비 총 3억원 미만

※ 정부 추계액의 10분의 1 기준

-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예산을 수반시 비용추계서 작성
- 다. 비용추계서 작성방법 및 서식을 정함(안 제13조)
  -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별지 제2호)
  - 추계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 필요시 단축·연장가능
- 라.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규정(안 제14조)
  - 추계서의 제출시기는 구의회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 발의한 조례안인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첨부

-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시 미첨부 사유서 제출(별지 제3호)
- 마. 신설규정 삽입으로 조문배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3.8 ~ 28)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치법규"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4. "비용추계서"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 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5.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법인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입법예고

- 제5조(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2.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4. 입법이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제6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명
  -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시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 1. 제목
  - 2. 일시 및 장소
  - 3. 주요내용
  - 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의안의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내역, 비용 추계의 기준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14조(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5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 제16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제17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 제18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19조(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 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제21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의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ㅇㅇㅇㅇ 조례(규칙)를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제정(또는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ㅇㅇㅇㅇ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 제정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하고 전문(전부)개정, 부분(일부)개정, 폐지의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문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ㅇㅇㅇㅇ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일부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ㅇㅇㅇㅇ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폐 지의 경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ㅇㅇㅇㅇ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정(개정, 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 2. 주요내용 (다음과 같이 작성)
  -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 마. (제도의 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OO년 O월 O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OO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 3가 385-1) (전화 : OOOO- OOOO~O, FAX : OOOO OOOO)
-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OO년 O월 O일 O시 O분
  -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 (1)
    - (2)
  - 라. 발언자 수 : 인
  -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OO년O월O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OO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의견)
-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및 소속 직위를 기재) 및 연락전화번호

# ㅇㅇㅇ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내역
- 2. 비용추계 기준
-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0						
세입	0						
	소계(a)						
	0						
세출	0						
	소계(b)						
□ 총	비용(a-b)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지방세수입						
시비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 6. 추가의견
- 7. 작성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 1. 비용발생 내역: 조례안이 시행되는 경우 영등포구 세출의 순증가,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조례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 2. 비용추계 기준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산출근거, 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4. 비용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 5.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분권·특별)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6. 추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7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부서명 또는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내역(조	:례안 시	행시 예설	상되는	비용을	기재)	
	$\bigcirc$							
	$\bigcirc$							
2	미천부 =	그거 규정	(제192	·제 9 한 에	해다	하느기	亞 刈 )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 제시) ○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국 ○○○과 ○○○
연 락 처	00-0000-0000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신 · 구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현 행 제1장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 제 ] 조(목적) ---------- 사항 및 「지 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 15조제 [항의 규정에 방자치법」제 1 5조제 1항에 따라 위임된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 주민의 조례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페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 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 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 보하여 -----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 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의)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영등포구(이하 "구 1. "자치법규"라 -----"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 \ 개 2. "입법"이란 -----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 의무 3. "입법예고"란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 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 을 말한다. 〈신 설〉 4. "비용추계서"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 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 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 於 자료를 말한다. <u>〈신</u>설〉 5. "세출"이란 일반회계 · 특별회계의 세 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현 행	개 정 안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u>〈신 설〉</u>	6.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의 종류와 제정、공포의 절차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2장 <u>입 법 예 고</u>	제2장 <u>입법예고</u>
제5조(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u>예고 하여야 한다</u> . 다만, 다음 <u>각 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있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1.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상위 법령</u> 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u>상위법령</u>
4. 입법이 긴급을 <u>요하는</u> 경우	4 <u>필요로 하는</u>
제6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 별지 제1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이</u> <u>포함되도록</u>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문 작성) ① <u>사항이 포함</u> <u>되도록</u>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u> 필요한 사항	4. <u>그 밖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예고방법) ①、② (생 략)	제7조(예고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u>당해</u>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u>인정되는 단체 등</u> <u>에 대하여</u>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 다.	③ <u>해당</u> 인정되는 단체 등  <u>에</u>

현 행	개 정 안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u>없</u> 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예고기간) <u>없을</u> 때에는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u>자는 누구</u> 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u>사람은 누구</u>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u>지체없이 의견제출자 에게</u>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공청회) ①구청장은 입법에 필요 하다고 <u>인정하는</u>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 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① 인정할
②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u>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u> 의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u>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주제자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발표신청 방법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u>	② <u>할 때</u> <u>각 호</u>
③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u>한하여 발표</u> 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③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

## 현 행

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2조(전문) ①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조례의 전문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개	정	! 인	<u> </u>

제11조(협의 등) -----

--- 등이 필요한 -----

\_\_\_\_\_\_

제3장 의안의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예 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 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 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 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 '임의적으 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

현 행	개 정 안
	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제13조(공포번호) ①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내역, 비용 추계의 기준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재원의 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보조금,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지방채 발행,기금,특별회계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u>〈신 설〉</u>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u>〈신 설〉</u>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 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 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u>〈신 설〉</u>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4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 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① 제2 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 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 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

현 행	개 정 안
<u> </u>	8조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 를 첨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제15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5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u>〈신 설〉</u>	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u>〈신 설〉</u>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제16조(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 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u>〈신 설〉</u>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4장 자치법규의 정비	<u>〈삭 제〉</u>
제17조(자치법규 정비) ①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한다.1.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후 오랜기간동안 수정 보완되지 아니하여현실에 맞게 정비할필요가 있는경우3.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제17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 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u>〈삭 제〉</u>
제18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 서 주민의 수에서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제18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 가 발행된 날로 한다.
<u>〈신 설〉</u>	제19조(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 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u>〈신 설〉</u>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신 설)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구청장은 불합 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 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 · 보완되지 아니하여 현 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 요가 있는 경우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 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에게 불편을 초 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현 행	개 정 안
	의 재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u>〈신 설〉</u>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u>청구</u>
	제21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 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 의 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